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1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 강경숙・황운하・김한규

조 국・김준형・이해민

이재정 · 김선민 · 백승아

박은정 · 김재원 · 강유정

서왕진 · 신장식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마련된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조언·상담·주의·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고있음.

그런데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행위로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내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,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

하여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(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에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	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
학생생활지도) ①・② (생 략)	학생생활지도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
	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
	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
	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
	며, 학교에 학생생활지도에 필
	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